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원도서판

2026년 10월 10일

제278호

민사

1 청주지법 2025. 12. 4. 선고 2024나575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확정 479

성명불상자가 甲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乙 은행에서 甲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및 공동인증서 발급을 받은 다음, 甲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문서인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丙 주식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 직후 甲 명의의 乙 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이 모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 대출약정의 효력이 甲에게 귀속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대출약정 당시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본인 명의 계좌로 1원 입금을 통한 본인인증,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등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丙 회사가 당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대출약정의 효력이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성명불상자가 甲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乙 은행에서 甲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및 공동인증서 발급을 받은 다음, 甲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문서인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丙 주식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 직후 甲 명의의 乙 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이 모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丙 회사가 甲 명의의 위 대출신청서가 甲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 대출약정의 효력이甲에게 귀속되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비록 丙 회사가 대출약정 당시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본인 명의 계좌로 1원 입금을 통한 본인인증,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등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①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한 진위확인’의 경우, 본인확인에 사용된 甲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위조된 것으로,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이 甲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주소와 사진 등이 甲의 실제 주민등록증에 있는 것과 뚜렷이 다르고, 그 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본인 명의 계좌로 1원 입금을 통한 본인인증’의 경우, 본인인증에 이용된 甲 명의의 乙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이틀 전에 위조된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된 것이고, 거래 실적이 없는 甲에게 고액을 비대면으로 대출하는 丙 회사로서는 추가적인 인증절차를 요구하는 등으로 거래의 심사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회사가 대출약정 당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대출약정의 효력이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2 서울고법 2026. 7. 10. 선고 2025나208215, 208216 판결 (매매대금반환·기타 분양대금청구의소) : 상고 487

甲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乙 주식회사의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수분양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이 위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하여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판매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러한 행위에 기초하여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재화 등의 판매 전에 전화 통화가 있었다거나 판매 목적물을 홍보하며 ‘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본 후 계약 체결을 판단해 보라.’는 정도의 권유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분양대행사 직원의 문자메시지가 단순 광고나 홍보를 넘어 甲의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거나 甲이 위 전화 권유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乙 주식회사의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수분

양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이 위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제도의 입법 취지 및 소비자 권익의 보호와 거래 안전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의 ‘전화권유판매’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하여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판매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러한 행위에 기초하여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재화 등의 판매 전에 전화 통화가 있었다거나 판매 목적물을 홍보하며 ‘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본 후 계약 체결을 판단해 보라.’는 정도의 권유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거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현저히 높고 거래가 쉽지 않은 특수성이 있어 거래당사자는 목적물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의 내용과 빈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도인이 전화 등을 사용하여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분양대행사 직원이 甲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청약을 유인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당시 甲은 분양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오피스텔의 모형, 홍보 자료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은 단순히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존했다기보다 충분한 숙고를 거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대행사 직원의 문자메시지가 단순 광고나 홍보를 넘어 甲의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거나 甲이 위 전화권유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서울북부지법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용역비] : 항소 492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감소시켜 일반분양주택의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용역업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甲 법인과 乙 회사는 그 사이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법률사무는 甲 법인이, 그 외의 업무는 乙 회사가 수행하기로 하면서 용역비를 6:4로 나누어 갖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호는 공공주택지

구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구역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음에도 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는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았고, 甲 법인과 乙 회사가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결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丙 조합이 공급할 장기전세주택이 60세대에서 30세대로 감소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甲 법인이 丙 조합을 상대로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임계약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사무’를 비변호사인 乙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보수 등을 분배받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감소시켜 일반분양주택의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용역업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甲 법인과 乙 회사는 그 사이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법률사무는 甲 법인이, 그 외의 업무는 乙 회사가 수행하기로 하면서 용역비를 6:4로 나누어 갖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구역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음에도 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2019. 1. 3. 서울특별시 조례 제7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았고, 甲 법인과 乙 회사가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결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丙 조합이 공급할 장기전세주택이 60세대에서 30세대로 감소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甲 법인이 丙 조합을 상대로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에 필요한 조례 개정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시키는 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위한 현황 조사, 청원서 제출 및 관련 담당자 면담도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행위로서, 모두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점, 甲 법인과 乙 회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총보수의 분배 비율을

정하였고, 그 용역비는 ‘재정비축진계획 변경업무’라는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위임계약은 비변호사인 乙 회사가 甲 법인과 의 법률사무 수행을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약정’(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으로 봄이 타당한 점, 위 업무협약은 그 자체로 위 용역업무에 법률사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내포하고 있고, 甲 법인과 乙 회사도 乙 회사의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용역업무는 실질적으로 乙 회사가 수행한 것인데, 업무협약서는 그와 다르게 이를 甲 법인이 수행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 법인과 乙 회사가 각각 수행한 업무 부분이 가분적이거나, 甲 법인이 수행한 업무 부분만이라도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서 민법 제137조 단서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라도 유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위임계약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전부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조 세

4 서울행법 2026. 6. 24. 선고 2024구합5631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확정 … 506

피상속인과 그의 프랑스 국적 외국배우자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 후 공정증서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에 따라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프랑스 민법상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일방 사망 시 공동재산 전부를 생존 배우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며 혼인거행일로 소급하여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자녀인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이 乙 주식회사에 제작 미술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피상속인 사망 후 甲이 乙 회사와 증액한 금액을 반영하여 제작 미술품 가액을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였다는 전제 아래 해당 재산가액을 포함하며, 위 부동산들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외국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었음을 고려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후 甲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피상속인과 그의 프랑스 국적 외국배우자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 후 2000. 2. 7. 공정증서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에 따라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기로 합의(이하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프랑스 민법상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일방 사망 시 공동재산 전부를 생존 배우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며 혼인거행일로 소급하여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자녀인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이 乙 주식회사에 제작 미술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피상속인 사망 후 甲이 乙 회사와 증액한 금액을 반영하여 제작 미술품 가액을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였다는 전제 아래 해당 재산가액을 포함하며, 위 부동산들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외국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었음을 고려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후 甲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① 피상속인이 乙 회사와 약정한 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전에 체결된 것으로 그 가격이 위 미술품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甲이 증액한 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것으로 그 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시가로 예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증액한 금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액한 금액이 위 미술품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에 모두 적용되며,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자산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이었다가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부동산들의 경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라 부(夫)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되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성립 전 부부재산의 약정을 하지 않으면 혼인 중 이를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되므로 해당 부동산들은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프랑스 민법에서도 특유재산(단독소유)이라는 물권이 존재하므로 민사법적으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나,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는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재산으로 편입하는 등기를 마치는 등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들 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에게 해당 부동산들에 관하여 공유유사관계를 설정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세법의 관점에서는 해당 부동산들이 2000. 2. 7. 프랑스에서 유효한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유재산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1990. 11. 20. 공동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구 섭외사법 제17조에 따라 준거법이 되는 우리나라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유재산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단서는 같은 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사인증여를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 관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프랑스 민법 제1525조 제1항이 ‘불균등지분약정과 전부분배조항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도, 결코 증여가 아니라 단지 부부재산상 그리고 사원 간 약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프랑스에서 사법(私法)상 증여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전부분배조항에 따른 취득은 세법의 관점에서 사인증여로서 ‘상속’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형 사

5 서울중앙지법 2026. 8. 26. 선고 2025고단6389 판결〔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항소 514

학원 수학강사와 교재개발실장인 피고인 甲과 乙이 현직 교원인 피고인 丙과 丁으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甲과 乙은 피고인 丙과 丁이 제작한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20회에 걸쳐 금품을 송금하고 피고인 丙과 丁은 이를 송금받음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즉 문항의 제작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학원 수학강사와 교재개발실장인 피고인 甲과 乙이 현직 교원인 피고인 丙과 丁으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乙이 피고인 丙과 丁에게 문항 출제를 권유한 후 문항 제작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고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甲이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함에 따라 피고인 甲과 乙은 피고인 丙과 丁이 제작한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20회에 걸쳐 금품을 송금하고, 피고인 丙과 丁은 이를 송금받음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 丙이 받은 금액은 모의고사용 문항의 경우 문항당 평균 241,653원, 일반 교재용 문항의 경우 문항당 평균 124,604원이며, 피고인 丁이 받은 금액은 모의고사용 문항의 경우 문항당 평균 238,839원, 일반교재용 문항의 경우 문항당 평균 137,029원인 점, 피고인 甲과 乙은 피고인 丙, 丁 등의 현직 교사들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공모하기도 하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문항당 금액은 전문 업체의 경우 150,000원에서 391,304원, 공모의 경우 1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교사들에게 지급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그보다 높은 점, 피고인 甲과 乙은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의 내용을 심사·검토하여 실제로 교재에 채택하는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한 점, 피고인 丙과 丁이 소속 기관장의 검직허가를 받은 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丙과 丁은 피고인 甲에게 공급한 문항을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즉 문항의 제작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6 **창원지법 2026. 9. 1. 선고 2026고합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항소 521**

피고인 甲, 乙은 경찰관이고, 피고인 丙, 丁은 1급 응급구조사로 소방관(119구급대원)인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해자 戊(여, 41세)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자신의 허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하자 피고인 甲, 乙이 戊의 입안에 수건을 밀어 넣어 제압하였고, 경찰의 공동대응요청(구급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피고인 丙, 丁이 위 수건을 즉시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戊를 기도폐색성 질식사케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피고인들의 회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甲, 乙은 경찰관이고, 피고인 丙, 丁은 1급 응급구조사로 소방관(119구급대원)인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해자

戊(여, 41세)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자신의 허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하자 피고인 甲, 乙이 戊의 입안에 수건(가로 약 80cm, 세로 약 40cm)을 밀어 넣어 제압하였고, 경찰의 공동대응요청(구급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피고인 丙, 丁이 위 수건을 즉시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戊를 기도폐색성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① 경찰관인 피고인 甲, 乙의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수건으로 戊의 자해행위를 저지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戊는 정상적인 반응이나 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귀가를 종용·지원하려는 피고인 甲, 乙에게 강한 반감을 보이며 격렬히 저항하였으며, 피고인 甲, 乙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물론 戊 스스로 머리를 땅에 부딪히거나 허를 깨무는 등으로 생명·신체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체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세게 저항하는 등 정신적·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경찰관이나 시민들에 대한 위해는 물론 戊 스스로 허를 깨무는 등 돌발적으로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戊 자신에게 심각한 생명·신체상의 침해가 언제라도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인 甲, 乙은 戊가 예상을 넘어 스스로 허를 깨무는 등의 자해행위를 시도하자 우선적으로 이를 저지하여 戊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戊의 돌발적인 자해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건을 戊의 입에 넣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甲, 乙의 판단이나 조치가 주취자에 대한 현장 대처 시 자해라는 돌발적 상황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거나 경찰관에게 부여된 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戊의 저항이 다소 잦아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戊의 자해 가능성이 소멸·감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戊가 사실상 저항을 멈추었다는 사정을 심정지 등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자해저지조치를 더 경한 것으로 변경해야 할 유의미한 신호로 이해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甲, 乙에게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 乙이 당시 상황에서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여 戊의 자해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질식사 위험까지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 소방관인 피고인 丙, 丁의 경우, 경찰관들보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였고, 현장정보가 경찰관들에 비하여 부족하였으며, 이미 경찰관들이 戊의 입안에 수건을 물리며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戊의 질식 내지 심정지를 추지할 만한 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丙, 丁이

출동 직후 戊의 입안에 수건이 넣어져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응급구호 관점에서 상황변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현장 상황의 급박성, 중대성,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 甲, 乙의 지시 내지 지휘에 따라 초동대응을 한 것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으로서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거나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甲, 乙이 戊의 입안에 수건을 넣은 이후에 戊가 저항을 멈춘 것이 戊의 탈진 때문인지 아니면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때문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당시 현장의 특수성, 급박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丙, 丁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수건을 제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의료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丙, 丁이 당시 상황에서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여 戊의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